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145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타	㈜비바리퍼블리카

2. 조치내용

□ **(금감원 원안)** ㈜비바리퍼블리카 과징금 45억 5백만원

□ **(수정의결)** 면제(1건) 및 보류(2건) 조치*

*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(6월말 예정) 취지를 고려하여 제척기간 임박 행위 1건에 대해 향후 철회 혹은 재심사 요청이 예상되므로 면제 조치 및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보류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증권신고서(모집) 제출의무 위반

○ 회사는 '21.6.23. 93인에게 전환우선주 4,623억원, 2021.9.17. 244인에게 보통주 421억원을 모집하고, '22.8.3.~11.30. 기간 중 55인에게 전환우선주 5,672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총 3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 증권신고서(모집) 제출의무 위반

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7항, 제119조 제1항, 제132조 제1호, 제429조 제1항 제2호,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, 제120조 제1항 제1호